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4호)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요청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3

I. 제안경위

1. 정청래의원안(2201814)

가.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2. 조경태의원안(2202092)

가.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청래의원안(2201814)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

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2. 조경태의원안(2202092)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요청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의사가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정청래의원안 제13조의3 신설 및 조경태의원안 제13조제4항 신설),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조경태의원안 제41조제2항).

현행	정청래의원안	조경태의원안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의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1)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현행	정청래의원안	조경태의원안
<u><신설></u>	<u>제13조의3(기록 열람 등) 동물의 보호자는</u> <u>수의사에게 진료받은</u> <u>동물에 관한 기록(추</u> <u>가기재·수정된 경우</u> <u>추가기재·수정된 기</u> <u>록 및 추가기재·수</u> <u>정 전의 원본을 모두</u> <u>포함한다. 이하 같다)</u> <u>의 전부 또는 일부에</u> <u>대하여 열람 또는 그</u> <u>사본의 발급 등 내용</u> <u>의 확인을 요청할 수</u> <u>있다. 이 경우 수의사</u> <u>는 정당한 사유가 없</u> <u>으면 이를 거부하여</u> <u>서는 아니 된다.</u>	<u>그 내용확인을 요구</u> <u>하면 그 요구에 따라</u> <u>야 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정청태의원안	조경태의원안
1. ~ 1의8. (생략)		1. ~ 1의8. (현행과 같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2. ----- ----- ----- <u>두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사람,</u> ----- ----- ---
2의2. ~ 9. (생략)		2의2.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보존기간을 1년으로, 기재사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료부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u>병명과 주요 증상</u>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마. <u>치료방법(처방과 처치)</u> 바. <u>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u>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	---

현행법령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록·서명 및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보호자 등이 자신이 소유·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공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청태의원안의 경우,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을 요청하면,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수의사가 이를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경태의원안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소유자등²⁾이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을 요구하면 수의사가 이를 따르도록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정청래의원안과 조경태의원안의 비교 】

구분	정청래의원안	조경태의원안
요청/요구 내용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	진료부 · 검안부
요청/요구 주체	동물의 보호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소유자등
적용대상 동물	<u>모든 동물</u> (별도의 범가지정 없음)	「동물보호법」상 <u>반려동물</u> (개 · 고양이 · 토끼 · 페럿 · 기니피그 및 햄스터)
위반시 과태료 규정	없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간 동물의 소유자 · 보호자 등이 자신이 소유 ·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 어떠한 진료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동물 의료서비스의 책임성 · 투명성이 약화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이른바 ‘펫보험’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대상 보험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부 또는 검안부 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이 「의료법」³⁾과는 달리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가 진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보험구조를 설계하기 어려운 등 사람 대상 보험산업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3)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 · 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 ·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진료부 또는 검안부와 같은 진료기록을 해당 동물을 소유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등의 자에게 공개한다면 동물 의료서비스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대상 보험산업의 효율성 증가를 통해 시장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첫째, 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데,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는 경우 진료부에 작성되어있는 사용 의약품이 치료방법과 함께 공개되어, 이를 통해 비전문가인 소유자·보호자 등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진료부가 공개되고 있는 사람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하여 표준화되어 있어 의료용어·치료방법 및 기록방법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동물의료의 경우 표준화된 동물의료 기록방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기재사항 작성원칙 등 역시 관련규정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동물의료에 관한 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기록을 공개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상에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는 진단서 등⁴⁾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진료기록 공개 범위에서 의약품 사용⁵⁾ 등의 부분이 제외되고,
정보공개 시 처벌강화 등의 보완조치가 병행된다면 치료행위 및 진료
비 내역 등의 공개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물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의무
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로 인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소비자 피
해구제·보험금 청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열람·사본발급을 제한하고
동물의 소유자·보호자 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열람·사본발급을 금
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사람의료에 관한 진료기록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
법례인 「의료법」⁶⁾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의사 외에 동물병원

4)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참고로 대한수의사회는 의약품 사용내역 공개시 의약품의 오·남용 외에 지적재산권 침해 역시 우려된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동물진료에 있어 어떠한 의약품을 사용할지에 관한 정보는 개별 수의사의 지적재산권 영역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고 함.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를 피규제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청래의원안과 관련해서는 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경태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427

참 고 자 료

참 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상 진단서 양식(별지 제4호의2)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진 단 서

동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사육 장소			
동물의 표시	종류	품종	
	동물명(동물등록번호)	성별	
	연령	털색	
	특징		
병명 임상적 추정[] 최종 진단[]			
발병 연월일 (임신 연월일)			
진단 연월일			
주요 증상			
치료명칭			
입원·퇴원일			
예후 소견			
그 밖의 사항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에 √ 표시를 하고, 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은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동물병원 사이에 정보통신매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